

● 원자력법 개정 주요 골자

을 폐지함(현행 제44조의2·제44조의3 및 제48조 내지 제52조 삭제).

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방사성물질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함(현행 제49조제3항·제63조·제70조제3항 및 제81조제3항 삭제).

차.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검사제도를 신설함(안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2조 및 제73조).

카. 원자로설치·운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사능오염의 제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운반, 방사선구역 출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및 설비·기기의 정비·보수 등에 관한 역무제공업등록제도를 폐지함(현행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5 삭제).

타.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기능과 방사능측정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의7).

주) 원자력법 개정안은 99년 1월 5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음.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에 관한 사항

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응시자격(시행령283조제2항관련:개정97.7.10)

가. 이공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과목(시행령285조관련: 개정95.10.19)

가. 필기시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원자력기초이론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에 관한 사항

-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 3) 방사선에 의한 장애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나. 실시시험 : 없음

3.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과학기술부고시 제1997-17호 1997년 12월 23일)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력 내용	환산율	산 출 방 법
1. 법 제6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이나 방사선장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103조 및 영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과학기술부 (2) 한국원자력연구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0%	1. <u>한국원자력연구소</u> 에서 실시하는 <u>4주이상</u> 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력(이 경우 교육훈련경력은 실무경력 <u>1년</u> 으로 환산한다.) 2. <u>사단법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u> 에서 실시하는 <u>9개월이상</u> 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을 이수한 경력(이 경우 통신교육훈련경력은 실무경력 1년으로 환산한다.)
3. 교육법 제75조에 규정하는 교원으로서 이공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포함하는 교과목의 교육에 종사한 경력 4.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직업훈련교사로서 직업훈련기관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포함하는 교과목의 직업훈련에 종사한 경력	80%	3. 경력기간을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경력산출기준일은 원서마감일로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에 관한 사항

4. 원자력관계면허시험 (RI 관련) 일정표 -

시험 분야	공고일	필기시험	필기발표	최종발표
제51회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시험	3.25	4.25	5.13	6.1
제52회 방사성동위원소 특수 및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시험	10.7	11.07	12.2	12.21
제17회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면허시험				

- ※ 위 시험과 관련하여 공고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조정될 수도 있음.
- ※ 위 면허시험은 매 시행시마다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시험시행에 관한 원서접수 및 교부사항, 및 응시수수료, 시험일자 및 장소등을 공고함
- ※ 문의처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 (042-861- 2537, 4049)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503-7654, 7655)

● 신문속의 RI뉴스

원자력분야에서도 연구원들의 창업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들어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한 가운데 원자력분야에서도 연구원들의 창업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이미 8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되는데 이어 원자력연구소 양자광학팀의 김성호박사와 원자력광기전기술개발팀의 김광석박사가 각각 22일 대덕 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에서 (주)한국광학시스템과 (주)금광레이저의 창업식을 갖는다. 김성호박사의 한국광학시스템은 레이저 및 광응용기술을 기반으로 천체망원경, 산업용실체현미경, 광계측시스템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

현재 국내 광학회사에서 생산하는 광학부품의 가공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나 광학기기의 시스템 설계기술을 갖춘 업체는 전무한 실정. 그러나 광학시스템은 레이저 및 광응용기술